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사업안내지침

2025. 6.

1. 추진근거

- 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2항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나.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 8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2. 용어의 정의

- 가. 기업·기관: 참여예술인과 함께 예술 협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 나. 참여예술인: 기업·기관과 매칭되어 예술협업활동을 운영 및 실행하는 예술인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 사업기간: 2025. 3. ~ 12. (※활동기간: 2025. 6. ~ 10. (5개월))
- 사업목적
 -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사업규모: 참여 기업·기관 32개소, 참여예술인 48명
- 사업대상: 부산 소재 기업·기관 및 예술인
- 사업내용: 기업·기관 발굴 및 예술인 파견(1:1~2매칭)

□ 추진체계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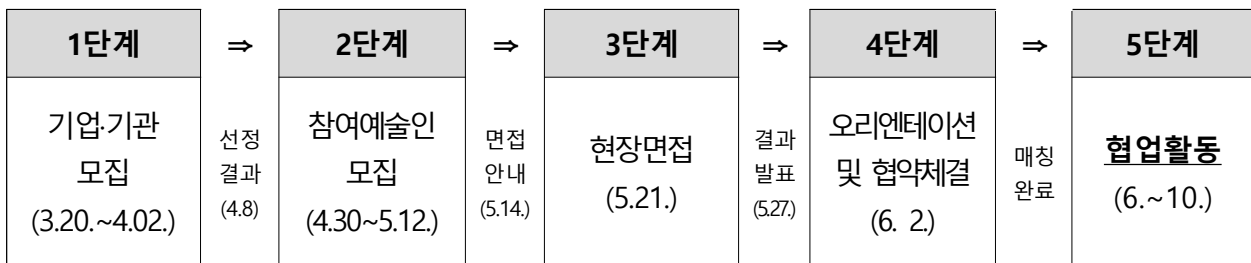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기업·기관	참여 예술인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업·기관/예술인 모집 및 선정 • 오리엔테이션 및 모니터링 • 활동비 지급(매월 20일) • 기타 간담회 등 행사 운영	• 예술협업활동에 필요한 제반환경(공간, 재료비 등) 제공 • 예술인 협력 체계 구축 •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매월 10일) • 기타 협업활동 지원 결과공유회 참석 등	• 참여기업·기관 이슈 진단 및 협업활동 방향 기획 •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매월 5일) • 기업·기관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결과공유회 참석 등

□ 사업구조

사업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유형	개인형	협력형
대상	기업·기관 32개소 예술인 48명	기업·기관 7곳 예술인 35명 (리더예술인 7명 내외, 참여예술인 28명)
내용	공모를 통한 기업·기관 발굴 및 예술인 매칭(1:1~2매칭)	공모를 통한 기업·기관 발굴 및 예술인 매칭(1:5매칭)
활동비	월 160만원(5개월)	리더예술인 월 140만원(6개월) 참여예술인 월 120만원(5개월)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산문화재단

□ 추진절차



3-1 지원개요(기업 · 기관)

□ 지원대상

-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부산 소재 기업·기관 32곳

□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참여예술인	기업·기관별 참여예술인 1~2명 파견 및 협업기회 제공

□ 지원유형

협업활동 유형	
ESG 경영·사회공헌활동	메세나,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사회문제해결,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등
환경·생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종식, 질병, 성평등, 난민, 분쟁 등
홍보마케팅	기업·기관 이미지 제고, 브랜딩 등
사내 직원 복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복리후생 향상 등
공간 개선·활성화	유휴공간 개선, 공간 거점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고유자원 예술적 재해석,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또는 개선	-

※ 기업·기관에 소속된 예술인과는 매칭 불가, 최종 선정 이후라도 매칭 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부산문화재단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유형	내용	세부내용
협업활동	월 5회 15시간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 참여예술인 협업활동 운영
보고서	활동보고서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후 제출(익월 10일)
	결과보고서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사업종료 후 1회)
프로그램	상시	오리엔테이션(협약식), 결과공유회, 필수교육프로그램 (저작권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등 참석 필수

□ 후원표시

- 기업·기관은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결과물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함

▶ 후원표시는 홍보물 사이즈 및 종류에 따라 '로고' 혹은 '기관명'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음

로고 표기		
기관명 표기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기타	본 사업은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2 지원개요[참여예술인]

□ 지원대상

- 참여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부산 예술인 48명

□ 지원유형

활동대상	기간	지원금
참여예술인	6.1. ~ 10.31. (5개월)	월 160만원 × 5개월 총 800만원 지원 (세액 및 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사업소득세(3.3%)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0.8%) 공제

□ 지원조건

유형	내용	세부내용
활동일	월 10일 30시간 이상	(협업활동) 최소 5일 15시간 이상 ①기업·기관 담당자-참여예술인 간의 협업활동을 위한 회의, 프로그램 운영 등 ②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의 경우 협업 활동으로 인정 (개별활동) 최대 5일 15시간 이상 ①개별활동 증빙 자료는 개별활동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사진, 작업물 등) ②사업과 무관한 개인 연습 및 현장 답사 등 불인정
보고서	활동보고서	익월 5일 제출(총 5회)
	결과보고서	연 1회 제출(사업종료 후)
프로그램	상시	-약정식, 간담회,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모니터링 협조, 필수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 활동보고서 제출

- 매월 1회 기한 내 재단에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는 참여예술인이 기업·기관에서 활동한 근거자료임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되며, 활동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방법: 이메일(gamman@bscf.or.kr)
- 활동보고서 첨부사진 지정 앱

어플명	아이콘	사용 예
Timemark 타임마크		
Timestamp Camera Enterprise		

□ 활동시간 인정 범위

- 오리엔테이션, 필수교육 등 재단 행사에 참석할 경우 활동으로 인정 가능
 - ※ 재단 행사 참석시 협업활동으로 1일, 참석시간만큼 인정
- 협업활동은 협업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기관 담당자,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가능
- 리서치 및 개인 작업실에서의 활동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협업 활동 관련 범위에서만 인정 가능

※ 단순 개별적 작업, 연습, 관람 등의 시간은 인정 불가

- 동일한 날에 진행한 활동의 경우, 시간은 합산되지만 1일 활동으로 인정됨
 - (예) 6.10.(화) ①10:00~12:00 기업·기관과 회의 ② 13:00~17:00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진행 ▶ 협업 1일 6시간 인정

□ 협업활동 진행 관련

- 해외에 체류할 상황이 발행할 경우, 재단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활동일수(10일, 30시간)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시간의 해외체류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기관과 충분히 공유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고서에 10일, 30시간 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술인의 활동비가 미지급

- 기업·기관에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기업·기관과 협의 후 별도의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비 지급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담당자	재단 담당자
내용	활동보고서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확인	활동보고서 확인 및 활동비 지급
제출일	익월 5일	익월 10일까지	익월 20일 지급

※ 재단의 사업 담당자는 보고서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예술인은 수정 후 재제출해야함

□ 지급사항

- 참여예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익월 20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 활동비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활동시간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급에 필요한 서류(활동보고서 등)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조사(본인 결혼·입원, 직계가족 사망 등), 질병 및 상해 등 사회통념상 불
가피한 경우로 인해 의무활동일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시 미달된 의무활동일수
및 시간과 활동비 지급은 다음 차수로 이월가능(활동 마지막 달은 해당되지 않음)

- 예술인 고용보험 본인부담금(활동비*75%*0.8%*) 및 원천세(3.3%) 공제 후 지급됩니다.
- 활동비는 기업·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진행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 협업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는 기업·기관에서 별도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비에 따라 수급대상자격과 급여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활동 관련 유의사항

□ 기업 · 기관

상세내용	조치내용
[사회통념상 윤리] ○ 활동보고서 상 예술인의 사실과 다른 활동시간 및 활동 내용 기재를 묵인한 경우 ○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 고의로 재단, 예술인을 비방하여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제 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약정해지
[사업 참여 지속 가능성] ○ 기업·기관의 휴·폐업 또는 도산, 합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예술인의 의무활동일수(시간)의 활동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 예술인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으로 정상적인 협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 해지
[매칭 관련 사항] 최종 매칭 이후, 약정체결을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년간 예술인파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과의 협업관계] ○ 재단의 동의없이 예술인의 활동을 제3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 재단 및 예술인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 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활동(노동)을 지시한 경우 ○ 모니터링, 자료제출 등을 합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활동을 통해 취득된 성과물을 재단 또는 예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지시 및 경고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부여

※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여예술인

상세내용	조치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부정한 방법) 실제로 활동한 것과 다른 내역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술인의 고의, 과실 등에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제 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약정 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인 본인이 소속된 기업·기관과 매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협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 예시 -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등 협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특정인의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의 일정을 타 참여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 -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타 참여자에게 제안 또는 강요한 경우	당해 연도 약정 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최종 매칭 이후, 약정체결을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년간 예술인파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관련] ○ 필수행사(OT) 불참 ○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미흡(지정앱 사진, 첨부파일 등) ○ 필수협업활동 미충족 ○ 활동보고서 제출이 2회 지연된 경우 ※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누적 5회시 당해연도 당해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사업참여중단

-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이 사업 진행 중 참여를 중단할 경우, 중단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재단을 알려야 합니다.
- 기업·기관이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참여예술인은 기업·기관을 변경하여 활동을 추진할 수 없으며, 해당 협업 활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 모니터링 및 활동관리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활동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 시, 예술인은 및 기업·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재단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 재단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및 기업·기관의 결과와 협업활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받은 주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6월 활동보고서(예시)

참여 예술인명	김문화	
참여 기업(기관)	부산문화재단	
활동 내용		
활동 요약	- 부산문화재단 직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000축제 지원 -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공감 그리고> 기사 작성	
세부 활동 내용	첫째 주	▪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표지 시안 작업 회의 ▪ 편집회의 참석 및 레퍼런스 검색
	둘째 주	▪ 부산문화재단 직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000축제 홍보부스 운영 지원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활동 일수 및 시간	협업활동	개인활동
	5일 / 15시간	5일 / 15시간
총 활동 시간 (10일, 30시간)	10일 / 30시간	

참여예술인 김문화 (날인)
 기업(기관) 담당자 박재단 (날인)

활동 시간(협업활동)									
날짜	6.2	시작 시간	14:00	종료 시간	17:00	활동 시간	3	진행 장소	부산문화재단
	6.9		14:00		17:00		3		홍티아트센터
	6.16		14:00		17:00		3		부산문화재단
	6.18		18:00		21:00		3		F1963
	6.20		14:00		17:00		3		부산시민공원
	6.25								
활동시간 합계							15		

활동 시간(개별활동)									
날짜	6.1	시작 시간	14:00	종료 시간	17:00	활동 시간	3	진행 장소	자택
	6.3		14:00		17:00		3		작업실
	6.10		14:00		17:00		3		작업실
	6.19		18:00		21:00		3		카페
	6.21		14:00		17:00		3		자택
활동시간 합계							15		

협업활동 및 개별활동 세부내용 작성 시 매 활동마다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지정앱으로 촬영하여 증빙가능한 활동만 기재 가능

협업활동 세부내용	
☐ 협업 활동 1 ☐ 일 시 : 06.02 ☐ 장 소 : 부산문화재단 ☐ 활동시간 : 14:00~17:00 ☐ 활동내용 - 부산문화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부산문화재단 직원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석자: 23명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관한 의견도 수렴함 - 협업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 검토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담당자, 김문화)	☐ 증빙사진(2장)  

개별활동 세부내용	
☐ 개별 활동 1 ☐ 일 시 : 6.3 ☐ 장 소 : 작업실 ☐ 활동시간 : 14:00~17:00 ☐ 활동내용 -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제작에 따른 레퍼런스 검색 - 편집회의 진행에 따른 준비 - 원고 주제 및 집필진 섭외 계획 - 타기업 자료 검색 - 주제 선정에 따른 세부 내용 리서치	☐ 증빙사진(1장 이상) 

6

예술인파견지원사업 Q&A

1. 활동인정시간 범위

Q1 워크숍, 저작권 상담 등 재단 행사에 참석하면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재단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과 간담회, 모니터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 전·후 재단에서 각 행사 참석에 따른 인정시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예시) 오리엔테이션 활동인정 일수/시간: (1일) 1시간 30분

Q2 리서치나 개인 작업실에서의 활동도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협업활동 관련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단순 개별적 작업, 연습, 관람 등의 시간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활동의 전체 의무활동일수(10일, 30시간 이상) 중 1/2에 해당하는 5일 15시간 이상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 활동(5일, 15시간 이상)은 참여 기업·기관과 협의된 장소 및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진행 관련

Q1 기업기관 또는 참여예술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업활동을 통해 갈등(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논의를 통해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단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1팀 051-745-7232, 7230)

Q2 해외체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단 측에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활동 일수(10일, 30시간)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시간의 해외체류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기관 및 협업활동 예술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Q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의 결과물 제작, 홍보, 전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 네, 외부에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협업 활동이 공개될 경우, 반드시 “본 행사(공연, 전시 등 내용에 맞게 수정)는 부산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 혹은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등 사업관련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주최/주관/후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최/주관/후원 표기방법> - 주최/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주관: 기업·기관명	
Q4	매칭된 기업·기관에서 월 10일, 30시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의무활동일수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기업·기관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해사항의 경우 재단에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Q5	매칭된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매칭된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최종매칭 및 사업참여 중단	
Q1	면접 시 1순위 예술인이 최종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복수의 기업·기관에서 동일한 예술인을 희망하는 경우 단순히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협업활동과 참여예술인의 부합성, 최근 3년 이내 기업·기관에 참여예술인이 소속되어 작업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 참여 기업·기관의 매칭 인원과 면접 인원, 면접 순위, 사업운영 효율성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기업·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술가와 협력하는 것이 아닌, 기업·기관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한정된 자원 및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업·기관과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순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 기업·기관과 매칭 예술인들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낼 새로운 협업활동과 경험 또한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협업활동 중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 전 5개월 활동기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전 예측 가능한 참여 중단 사안들을 사전 조정 또는 고려하셨으리라 봅니다.
- 따라서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중단을 초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를 중단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향후 재단 사업 참여제한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참여약정서

(재)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_____ (기업·기관명) (이하 “기업·기관”라 한다) 과 _____ (참여예술인명) 2인일 경우 모두 기재 (이하 “참여예술인”이라 한다)은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이하 “굿모닝 예술인”이라 한다) 참여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① 기업·기관 : “참여예술인”과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기업·기관
- ② 참여예술인 : 굿모닝 예술인에 선정되어 “기업·기관”에 매칭이 완료된 후 예술협업활동을 협력, 실행하는 예술인

제3조(지원기간)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활동시작일(2025년 5월 1일)부터 활동종료일(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 ① ‘재단’은 “기업·기관”에게 “참여예술인” 매칭을 지원하며, 예술 협업과정 및 결과물을 통해 조직 내 예술적 변화 및 이슈 해결 등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주체 간 소통 및 성과추진을 위해 컨설팅·모니터링을 지원한다.
- ② “재단”은 “참여예술인”의 활동비를 활동기간(5~10월)에 매월 160만원씩 5개월을 지원한다.
- ③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20.12.10)되어 예술로 사업의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문화예술용역’ 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재단”이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료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1. 활동비는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함
 2.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액(총 활동비×0.75÷활동기간)×1.6%*로 산정하며 “참여예술인”과 “재단”이 각각 1/2씩 부담함. (*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기준에 따름)
- ④ 활동비는 “참여예술인”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진행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참여예술인 활동비 지급조건)

- ① “참여예술인”은 지원기간 동안 매월 10일 30시간 이상(협업활동 5일, 15시간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해당 월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참여예술인”은 “재단”이 지정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마지막달은 결과보고서 제출 포함)로 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참여예술인”가 월별 활동보고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해당 월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참여예술인”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족한 활동일수(시간)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된 활동일수(시간)를 포함한 활동보고서 제출 시 “재단”은 이전 활동비와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참여예술인”이 활동 마지막 달에는 활동일수(시간)을 이월할 수 없으며 “재단”은 해당 월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의 의무)

- ① “기업·기관”과 “참여예술인”은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참여예술인”의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기업·기관”은 지원기간 동안 “참여예술인”의 매월 의무활동일수(시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월별 활동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업·기관”은 “참여예술인”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활동(노동)을 지시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내용을 “참여예술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④ “참여예술인”은 “기업·기관”에서 수행할 예술협업활동의 내용을 “재단”과 협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⑤ “참여예술인”은 의무활동일수(시간)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활동일수(시간) 원칙 내에서 세부적인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보조인력, 재료비, 공간 등)은 “기업·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 ⑥ “재단”은 굿모닝 예술인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에게 활동 컨설팅·모니터링, 설문조사, 사진·영상 촬영 요청 및 기타 사진, 기록물 등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 결과물(성과물)을 홍보, 전시, 출판, 온라인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귀속)

- ① 지원기간 중 “참여예술인”을 통해 산출된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은 “참여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예술인”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예술협업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여부는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기타 협업 주체들과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외 사항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예술협업활동의 결과물이 공개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은 담당 직무 및 역할에 따라 “기업·기관”에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참여 중단)

- ① “기업·기관”은 자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참여 기간 중 휴·폐업 또는 도산, 합병 등 경영상의 사유로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참여예술인”의 월 의무활동일수(시간)의 활동 보장이 불가한 경우
 3. “참여예술인”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으로 정상적인 협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속적 사업 참여가 불가하여 “재단”에 사업 참여 중단을 신청한 경우
 5. 사업 담당자의 변경 또는 부재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② “참여예술인”은 자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의 의무)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활동기간 중 “참여예술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업, 해외체류, 입원·수술, 출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상태 등)
- ③ 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접수한 후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취소 및 약정해지)

①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이 제8조의 사유로 사업 참여 중단한 경우 약정이 자동 해지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정 지시 및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의 의무) 를 불이행하여 “재단”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았을 경우 단,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제8조(사업 참여 중단)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중단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참여예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참여예술인”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업·기관”의 대표자 및 소속 구성원 및 “참여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6. “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7. “참여예술인”이 본인이 소속된 “기업·기관”과 매칭된 경우
8.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수령하는 경우
9. 기타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업 참여제한) 제9조(지원취소 및 약정해지)의 해당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약정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본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재단”은 “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약정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2025년 6월 2일

“재단”

기 관 명: (재)부산문화재단
대 표 자 명: 오재환 (직인생략)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주 소 :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기업·기관”

기 업·기 관 명: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참여예술인1”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예술인2”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